
2022년도 분묘보상액 등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결정

2022. 4.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I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감정평가기관 평가·산정

- 토지·물건 등 대부분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산정

□ 사업시행자 직접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통적용 단가 산출이 가능한 분묘보상액, 이사비 등 4종의 보상액**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을 직접산정

<직접산정 손실보상 종류 및 산정 방법>

보상대상	산정방법	근거법령	비고
분묘보상액	경북·경남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한 분묘 보상단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토지보상법 제75조제4항 시행규칙 제42조	금회산정
이사비	통계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 및 차량운임을 주택건평 기준에 적용하여 산정	토지보상법 제75조제6항 시행규칙 제55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
주거이전비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 통계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토지보상법 제75조제6항 시행규칙 제54조	
영농손실액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 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정	토지보상법 제75조제6항 시행규칙 제48조	

※ 2022년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및 영농손실액은 관련 통계자료가 5월중 통계청 국가 통계포털(KOSIS)에 발표되며, 토지정책과-3466(2013.9.30.)호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시스템 활용」에 의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

□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경북·경남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한 분묘에 대한 보상단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산정기준

유연분묘 보상액	무연분묘 보상액
분묘이전비 ¹⁾ , 잡비 ²⁾ 및 이전보조비 ³⁾ 의 합계액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 이하

- 1) (분묘이전비)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레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가산) 및 운구차량비
 ※ 경북·경남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한 분묘 보상단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석물 이전비 및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분묘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정
- 2) (잡비) 분묘이전비 산정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3) (이전보조비) 100만원

□ 지급액(적용)

(단위: 원, 백원미만 절사)

구분	합계	분묘이전비 ^①		잡비 (①×30%)	이전보조비
		분판·마포·전지 ·제레비·노임	운구 차량비		
유연	단장	4,063,100	492,500	706,800	1,000,000
	합장	5,274,600	492,500	986,400	1,000,000
	삼합장	6,243,800	492,500	1,210,100	1,000,000
	사합장	6,970,600	492,500	1,377,800	1,000,000
	오합장	7,455,200	492,500	1,489,600	1,000,000
	육합장	7,697,600	492,500	1,545,600	1,000,000
	아장	2,609,400	492,500	371,400	1,000,000
무연	단장	1,361,600	115,500	314,200	-
	합장	1,967,200	115,500	453,900	-
	아장	634,600	115,500	146,400	-

- * 합장은 단장 분묘이전비에 50% 가산(운구차량비 제외)되며 아장 및 3합장 이상은 감정평가협회 분묘 평가지침 비율 적용
- * 무연은 유연 분묘이전비(운구차량비 제외)의 50% 적용

□ 분묘보상액 단가 증감 내역

(단위: 원)

구분	유연단장	유연합장	무연단장	무연합장	비고
'22년 (전년대비 증감내역)	4,063,100 (증 256,200)	5,274,600 (증 350,200)	1,361,600 (증 103,200)	1,967,200 (증 150,100)	
'21년	3,806,900	4,924,400	1,258,400	1,817,100	
'20년	3,786,100	4,893,200	1,248,000	1,801,500	

III 적용 기준

□ 적용대상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등 모든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적용

□ 적용시기

- 분묘보상액
 - 2022년도 단가 결정일로부터 2023년도 단가 결정 시까지 적용
- 이사비, 주거이전비, 영농손실액
 - 토지정책과-3466(2013.9.30.)호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시스템 활용」에 의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